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7-20

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

판 결

사 건	2016가단488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
원 고	A
피 고	[redacted]군
변 론 종 결	2016. 6. 1.
판 결 선 고	2016. 6. 22.

주 문

1. 이 사건 소 중 압류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.
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[redacted] [redacted]군 B 임야 8529㎡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2010. 3. 19. 한 부동산압류처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[redacted]등기소 2010. 3. 22. 접수 제10414호로 마친 2010. 3. 19.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7-20

1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2009. 9. 26. 주식회사 정해종합사무(이하 '소외 회사'라고 한다)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. 10. 28.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. 그러나 소외 회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다가 1년여가 경과한 2010. 10. 6.경에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. 그런데 피고는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는 사이 2010. 3. 19. 소외 회사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처분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2010. 3. 22. 압류등기를 마쳤는바, 원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, 위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.

2. 판 단

가. 압류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

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,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적법한 소로 보아 각하할 수 있다(대법원 1997. 5. 30. 선고 95다28960 판결 등 참조). 한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(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).

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, 이 사건 소 중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7-20

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것이므로, 원칙적으로 행정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할 것인데,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. 3. 19.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같은 달 22.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, 원고는 2010. 10. 14. 이 사건 부동산 중 1/2지분에 관하여 2010. 9. 30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, 원고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에는 피고의 위 압류사실을 알았다고 보이고, 원고가 위와 같이 압류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. 1. 18.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, 위 청구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.

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이를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, 직권으로 이 부분을 각하하기로 한다.

나. 압류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판단

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므로 살피건대, 원고가 피고의 압류등기 후인 2010. 10. 14. 이 사건 부동산 중 1/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,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등기를 요하는 형식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,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7-20

판사 이미주